

선박검사관련 규정 등 제 · 개정 사항(2005년 2/4분기)

해양수산부 제공

▣ 국제항해 중급유운송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에 관한 기준 제정 (해양수산부 공고 제2005-76호, 2005. 4. 1)

○ 시행일 : 2005. 4. 5

○ 제정사유

단일선체유조선의 조기 퇴출을 위하여 2005. 3. 12일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의 시행(2005. 4. 5)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중급유운송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대상선박 :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중급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단일선체유조선

※ 선령 25년 이하인 선박은 2005. 4. 5~2006. 4. 4까지 운항금지 및 입항거부를 적용하지 아니함

▣ 상태평가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11호, 2005. 4. 4)

○ 시행일 : 2005. 4. 5

○ 제정사유

2005. 3. 12일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의 시행(2005. 4. 5)에 따라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연장을 위한 상태평가검사 및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기 위함

○ 주요내용

가. 상태평가검사란

- 2005. 3. 12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단일선체유조선의 계속운항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검사

나. 상태평가검사의 종류

- 정밀검사 : 검사관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선체 구조부재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

세밀한 검사

- 현상검사 : 선체구조의 일반적인 현상을 파악하여 정밀검사의 범위를 추가로 결정하기 위한 검사
- 두께측정 : 두께측정업자에 의하여 정밀검사 전 또는 이와 병행하여 시행
 - ※ 두께측정은 두께측정업자(해양수산부 지정 또는 한국선급 인정업체)가 실시

다. 상태평가검사의 범위(제4조 관련)

- 화물지역 내의 화물탱크, 펌프실, 코퍼댐, 파이프터널, 보이드 스페이스 및 모든 밸러스트 탱크의 선체구조
 - ※ 화물지역 : 선박의 모든 화물탱크와 화물탱크에 인접하는 연료유탱크, 코퍼댐, 밸러스트탱크 및 보이드 스페이스를 말함

라. 상태평가검사의 절차

- 신청 : 지방해양수산청(검사착수 8월전까지)
- 검사계획 질의 : 대행검사기관→선박소유자(검사착수 7월전까지)
- 검사계획질의서에 대한 회신 : 선박소유자→대행검사기관(검사착수 5월전까지)
- 검사계획서 제출(3부) : 선박소유자→대행검사기관(검사착수 4월전까지)
- 수검장소와 일정 통보 : 선박소유자→대행검사기관(검사착수 2월전까지)
- 상태평가검사 실시 : 대행검사기관

- 종강도 평가 : 길이 130m 이상 선박
 - ※ 종강도 평가를 하지 않는 선박은 쇠모한도 확인
- 단기적합증서 교부 : 대행검사기관→선박소유자
-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교부 : 지방해양수산청→선박소유자
 - ※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 유효기간 : 5년 6월 이내

◆ 상태평가검사 대상 선박(국내항해 선박)

- 중급유운송 DWT 600~5,000미만 유조선 : 2008년 인도일(인도일을 모를 경우 진수일)전까지 상태평가검사를 실시하고 다음의 날까지 운항가능
 - 1979년 이전에 인도된 선박 : 2009년 인도일
 - 1980년~1982년에 인도된 선박 : 2010년 인도일
 - 1983년~1985년에 인도된 선박 : 2011년 인도일
 - 1986년에 인도된 선박 : 2012년 인도일
 - 1987년에 인도된 선박 : 2013년 인도일
 - 1988년에 인도된 선박 : 2014년 인도일
 - 1989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 : 2015년 인도일
- 중급유운송 DWT 5,000이상 유조선 : 2005. 4. 5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제1중중간검사이까지 상태평가검사를 실시하고 다음의 날까지 운항가능
 - 1977년 4월 5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: 2005년 4월 5일
 - 1977. 4. 6 ~ 1977. 12. 31일 사이에 인도된 선박 : 2005년 인도일

- 1978년 및 1979년에 인도된 선박 : 2006년 인도일
- 1980년 및 1981년에 인도된 선박 : 2007년 인도일
- 1982년에 인도된 선박 : 2008년 인도일
- 1983년에 인도된 선박 : 2009년 인도일
- 1984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 : 2010년 인도일

▣ 국제대기오염방지 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잠정기준 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19호, 2005. 5. 18)

○ 시행일 : 2005. 5. 19

○ 제정사유

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해양오염방지협약(MARPOL) 부속서6인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의 시행(2005. 5. 19)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 발급 절차 마련

○ 주요내용

- 가. 대기오염방지설비 검사 대상선박을 국제항해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 함
- 나. 협약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할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
- 다. 검사의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검사 합격선박에 대하여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를 발급토록 함

라. 검사대행기관이 대행할 업무를 규정하고 그 대행 수수료납부 방법을 규정함

마. 선박급유업자로 하여금 선박에 연료유 공급서 및 연료유 샘플을 제공토록 함

※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종류

-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(NOx) 배출방지설비(NOx Code 적용 디젤기관)
- 질소산화물(NOx)용 배기가스 세정장치
- 황산화물(SOx)용 배기가스 세정장치
- 선내소각기
- 유증기수집제어장치(VOCs)

▣ 선박설비기준 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31호, 2005. 6. 17)

○ 시행일 : 2005. 7. 17

○ 개정사유

선박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(LPG) 설비 설치요건을 신설,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(SOLAS)에 의한 검사용 접근설비의 설치기준을 마련 및 레이더반사기의 성능요건 개정 등 현행기준의 미비점을 보완

○ 주요내용

- 가. 선박에 설치되는 액화석유가스 설비의 설치요건 신설(제47조의2 관련)
 - 적용 시기
 - 현존선 : 2006. 06. 17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 또는 중간검사시부터 적용

- 신조선 : 2005. 07. 17부터 적용
- 주요내용
 - 액화석유가스용기 :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에 적합한 것을 사용
 - 배관용 관 : 「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사업법」에 적합한 다음의 것을 사용
 - 용기 ~ 중간밸브 : 배관용 강관,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
 - 중간밸브 ~ 연소기 입구 : 배관용 강관, 동관, 금속플렉시블호스 또는 호스
- 나.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설치요건 신설 (제108조의7제3항 관련)
 - 적용대상 선박 :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2002. 7. 1전에 건조된 총톤수 3,000톤 이상의 여객선이외의 선박
 - 적용시기
 - 총톤수 3,000톤~20,000톤 미만 : 2007. 7. 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 또는 제1종중간검사시까지(늦어도 2010. 1. 1전까지 설치)
 - 총톤수 20,000톤 이상 : 2006. 7. 1

- 이후 도래하는 정기 또는 제1종중간검사시까지(늦어도 2009. 1. 1전까지 설치)
- ※ 상기의 설치 시기로부터 2년 이내에 선박을 폐선하는 경우 설치 면제
- 다. 레이더반사기 성능요건 개정(제108조의8 관련)
 - 적용 대상 :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설치되는 레이더반사기
 - ※ 2005. 7. 1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 요건에 적합한 레이더반사기 설치 가능
- 라.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(SOLAS)에 의한 검사용 접근설비의 설치기준을 수용(제146조 및 제147조, 별표 18, 19 관련)
 - 적용대상 : 2006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다음 선박에 적용
 -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
 - 총톤수 20,000톤 이상의 산적화물선
 - ※ 검사용 접근설비(PMA : Permanent means of Access) : 유조선 또는 산적화물선의 내부구조부재의 검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선체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발판 등을 말함